

# 2025\_여름 계절학기\_회사법 리포트

-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도입 견해 비판 -



2025-여름 계절학기 회사법

서완석 교수님

202132987 주진무

202332279 이정미

202332317 김주영

202432422 허정현

# 목차

## I. 서론

## II. 선행연구정리

1. 용어 정의
2. 서완석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정리

## III. 지배주주 충실의무 도입 찬성론

1. 지배주주의 권력 남용 방지 필요성
2. 기존 법적 장치의 한계
3. 기업 지배구조 개선 효과
4. 도입의 기대효과

## IV. 지배주주 충실의무 도입 반대론

1. 기존 법체계 및 규제의 충분성 논리
2. 실무적 부작용 우려
3. 경제적 부작용
4. 기존 제도 정비와 운용 개선

## V.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도입하자는 견해 비판

## VI. 도입 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

## VII. 결론

## VIII. 참고문헌

\* 보고서 작성 히스토리

\* 소감 및 평가

## I. 서론

한국경제연구원(KERI)에 따르면, 상장그룹 30개 중 21개에서 지배주주 계열사 간 불공정 거래가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한 소수 주주의 연간 손실 추정액이 2조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 상법 개정 논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소수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배주주에게도 이사와 같은 충실의무를 부과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완석 교수는 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충실의무라는 법리를 지배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다.

본 보고서는 서완석 교수의 충실의무에 대한 법리적 고찰을 바탕으로,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도입 주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다양한 찬반 논문과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입법 시도가 실제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는 오히려 새로운 혼란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충실의무의 법적 확장보다는 현실적인 소수 주주 보호방안이 무엇인지도 함께 제시해 볼 것이다.

## II. 선행연구정리

들어가기에 앞서, 본 리포트에서 사용될 용어의 개념정리와, 서완석 교수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가겠다.

### 1. 용어 정의

#### 1) 지배주주

지배주주란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많이 소유하여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르면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회사의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 “수해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보유하는 자”,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자 등을 지배주주로 판시하였다.

#### 2) 충실의무

충실의무란 신인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수탁자의 의무인 신인의무의 내용 중 하나로 신탁자의 이익을 위해서 성실하게 책무를 다하여야할 의무를 의미한다.<sup>1)</sup>

#### 3)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과 원칙을 의미한다. 좁게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 및 기능, 경영자와 주주 간의 관계

1) 윤민섭,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도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6p

등을 총칭하며, 넓게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및 외부의 구조와 규제, 관행, 의식 등을 포함한다.

#### 4)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상장기업 주식의 가치평가 수준이 유사한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2000년대 초부터 관찰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2. 서완석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정리

서완석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회사 이익을 보호하면 주주의 이익도 자연스럽게 보호된다고 주장한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전통적으로 '회사'를 위해 부여된 의무로 이해되어 왔지만,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충실의무의 대상을 '일반주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가짐을 밝히며 시작한다.

서완석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는 본질적으로 회사를 그 대상으로 하는 의무라고 본다.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장하게 되면, 이사가 회사와 주주,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의사결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고,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충실의무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회사로 한정되어야 하고, 주주의 이익은 회사의 이익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본질적인 문제인 터널링으로 인한 소수 주주의 이익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적 장치와 규제 마련으로 투명성 강화,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 Ⅲ. 지배주주 충실의무 도입 찬성론

### 1. 지배주주의 권력 남용 방지 필요성

#### ① 소수 주주 이익 보호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본시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있어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 투자자가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익 추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투자자는 안심하고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건전한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투자자 보호는 자본시장 발전의 핵심이며 지배구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지배주주가 계열사 물적분할이나 개인 회사로의 불공정 거래를 통해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에 따르면, 상장그룹 30개 중 21개에서 지배주주 계열사 간 불공정 거래가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한 소수 주주의 연간 손실 추정액이 2조 원에 달한다.

나현승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액주주에 대한 이익 침해로 인한 주식 가치 저평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이라면서 "지배주주가 보유한 지분이 적음에도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 모든 계열사에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며 사익을 추구하고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2) Rafael La Porta, Florencia Lopez-de-Silanes, Andrei Shleifer, Robert Vishny, 2000, Investor Protec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다"고 분석했다.<sup>3)</sup>

## ②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견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수가 소수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계열회사의 이사회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인정할 실익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소수 주주에 대한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는 법적인 면에서는 소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규범이 될 수 있다.<sup>4)</sup>

교보증권 집계에 따르면, 2023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내 지주회사 58개 가운데 최대 주주가 법인이 아닌 자연인인 상장 지주회사는 30개, 이 중 최대 주주가 대표이사인 비율은 47%, 이사회 의장을 맡은 비율은 57%이다. 이처럼 이른바 기업주가 최대 주주로서 대표이사나 이사회 의장을 맡은 비율이 40% 이상으로 일반주주 보호 문제와 지배주주와 소수 주주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기 쉬운 환경이다.<sup>5)</sup> 이는 우리나라에선 지배주주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요구된다.

송호신 교수에 따르면, 현대 기업에서 지배주주는 회사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지배권을 갖기에, 이에 상응하여 그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의무가 상법 내에 존재해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고 밝히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와 소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판례나 입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음을 비교 분석하며, 한국 역시 이러한 법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한국은 지배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소수 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배주주의 지배력 행사에 정당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충실의무의 법적 명문화와 위반 시 제재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sup>6)</sup>

## 2. 기존 법적 장치의 한계

문정해 교수에 따르면 현행 상법으로 상법 제401조의2에 근거해 지배주주를 규제할 수 있다. 허나, 이는 이사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임무해태의 인정이 필요하고,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소수 주주가 직접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입증할 것이 요구되는데, 앞서 언급한 자료들을 통해 우리나라는 지배주주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서 소수 주주가 증명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불리한 위치일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다. 그리고 동법 제398조에서도 지배주주가 회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동조를 위반해도 회사만이 이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배주주에 대해 회사가 나서서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이는 소수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이 아니기에 이들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규정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sup>7)</sup>

3)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771>

4) 박창규,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 시 소수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 -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36(1), 2023, 282-283.

5) 강영기,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및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명문화에 관한 소고, 한국기업법학회, 2024, p.98.

6) 송호신,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에 대한 비교연혁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2010, p.330-360.

7) 문정해,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도입 가능성에 대한 소고 - 미국 델라웨어주법상 이사와 지배주주의 신인의무 비교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32(1), 2025, p.487-521.

국내 상장기업의 64.9%(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77.2%,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55.8%)은 주주총회 출석 지분을 70%로 가정할 경우 최대주주가 유효지분을 활용하여 단독으로 주주총회 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된다.<sup>8)</sup> 이 역시 현재 기업지배구조와 법적 장치는 지배주주의 막대한 영향력을 제지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보여준다.

### 3. 기업 지배구조 개선 효과

#### 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시장의 신뢰 회복이 주요 메커니즘이다. Jonathan Pines의 'South Korea - enough is enough'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가 고질적으로 희생되는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지적한다.<sup>9)</sup> 박주민 의원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기업의 지배주주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이를 견제하지 못하고 최대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하며, 이를 벗어나야 내부 투명성을 높이고 이른바 재벌 중심의 낡은 기업 지배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0)</sup>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2023)은 기업지배구조에서 주주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해외의 주요국들은 각 국의 시장 환경에 따라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아직 한국은 이들에 비해 주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도입한다면 글로벌 기준 부합의 필요성을 충족하며 국내의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② 기업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송인방 교수에 의하면, 지배주주는 자신의 지분율에 비례하는 권리 행사를 넘어서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만큼, 그 행위에는 정당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요구된다고 본다. 그는 지배주주의 행위 기준을 단순한 사적 권리의 범주로 보지 않고, 회사의 이익과 소수 주주의 권익을 고려한 공적인 책임의 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행위는 단순한 법률적 정당성만이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는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 회복과도 직결된다는 그의 입장이다.<sup>11)</sup>

김재범 교수는 주주의 충실의무를 이사의 충실의무와의 관계 속에서 검토하며, 특정한 지위에 있는 주주, 특히 지배주주에게는 일정한 충실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는 이사와 달리 일반주주는 원칙적으로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회사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는 예외적으로 회사의 이익과 소수 주주의 권익을 고려한 충실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주주 충실의무론이 이사 책임 원리의 연장선에서 기업지배의 실질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적 규율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될 여

8) 이성복,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현황과 특징",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4-20, 2024, 21p.

9)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4권 22호",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2024, 1p.

10) 창업일보, "상법을 통한 '한국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지배구조개선제도' 토론회 개최"(2024. 10. 04), <https://www.news33.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467> (최종방문일: 2025. 06. 28).

11) 송인방, 지배주주의 행위기준, 한국법학회, 2006, p.167-190.

지가 충분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sup>12)</sup>

아시아의 집중소유 기업구조에서는 지배주주가 이사처럼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이들에게도 충실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 기존 영미법 전통에서는 주주의 자율성을 강조했지만, 아시아 기업 현실에서는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와 이해충돌 문제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실의무를 통해 이를 법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Lim은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도입이 법원, 입법기관, 거래소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실현 가능하며, 이는 소수 주주 보호, 기업의 투명성 제고, 장기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sup>13)</sup>

기업의 신뢰도가 제고되고, 투자자 신뢰 회복으로 자본조달 환경이 개선된다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sup>14)</sup>

#### 4. 도입의 기대효과

##### ① 기업 성과와 주주 가치 증대

대한상익은 ‘아시아 각국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관관계 연구’ 보고서에서 “주가지수 상승은 경제와 기업의 여건, 인센티브를 통한 구조 개혁,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sup>15)</sup>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도입함으로써 이는 소수 주주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투자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강화

박기령은 지배주주 중심의 소유 및 지배구조가 일반주주 및 이해관계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실현에 필수임을 주장한다. 지배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사회 요소에 대한 고려, 그리고 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sup>16)</sup>

##### ③ 규제 환경과 기업 경쟁력 향상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시장가치 수익률을 하락시킬 만큼 충분한 주가 상승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경영 성과의 향상을 보이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sup>17)</sup>

## IV. 지배주주 충실의무 도입 반대론

### 1. 기존 법체계 및 규제의 충분성 논리

12) 김재범, 주주 충실의무론의 수용 이사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사)한국사법학회, 2015, p.175-204.

13) Ernest Lim,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Fiduciary Duties in 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14) KB캐피탈, "상법 개정, 기업과 주주의 새로운 관계", KB캐피탈 홈페이지, 접속일자 2025.06.28, <https://kbcapital.co.kr/aboutus/cmpgdnc/finLifeDtl.kbc?blbdSeqno=107663>.

15) 동아일보, "기업 지배구조와 주가 상관관계 불분명"(2024. 10 .02),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001/130138393/2> (최종방문일: 2025. 06. 28).

16) 박기령, "E.S.G 법제 정책연구(III)-E.S.G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제: 주주와 주주총회-", 한국법제연구원, 2023

17) 오재영,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성과 및 기업가치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증권학회, 2005, p.261.

총실의무는 신탁관계 또는 위임 관계에 수반되는 윤리적, 법적 책임이다. 지배주주와 소수 주주는 계약 관계가 아닌 투자자 간 평등한 지분관계일 뿐이면 이들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신탁관계’가 전제되지 않는다. Robert Flannigan은 “총실의무는 법적 수탁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수 의무이며 주주 간 관계는 계약법상 보호로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만약 지배주주에게 총실의무를 도입하면 결국 모든 다수 주주가 소수 주주를 위해 이익을 희생해야 하는 구조가 되며 이는 주주의 자본소유권 원칙과도 충돌한다.<sup>18)</sup>

최준선 교수는 이사의 총실의무는 회사에 대한 것이지 개별 주주를 향한 것이 아니며, 이를 주주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근거가 부족하고 불필요하다고 본다. 그는 ‘비례적 이익’ 개념은 모호하고, 주주평등원칙과 기존 상법상 보호장치로도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본다.<sup>19)</sup>

지배주주에게 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일반적 주의의무를 부과하려는 논의가 법리적 근거가 희박하고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한다. 지배주주는 이미 자신의 지분가치 보호라는 강력한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주의의무 없이도 기업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한다. 또한 이사와 달리 지배주주는 법적 대리인이 아니므로,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역할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한 과잉 규제라고 주장하며, 지배주주의 주의의무는 폐기되어야 할 관념이라고 결론짓는다.<sup>20)</sup>

현재도 한국 상법은 소수 주주 보호 장치(대표소송,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등)를 통해 다수 지배주주 견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여기에 총실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 규제이며 불필요한 법적 중복을 초래한다. 이상훈은 “실질적 보호는 제도 설계와 집행 역량에 달려 있지 명목상 의무 조항 하나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외국 입법계에서도 지배주주에게 일반적인 총실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국가는 드물며 대부분 강행적 절차 요건과 공시의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sup>21)</sup>

## 2. 실무적 부작용 우려

### ① 경영 불확실성 가중 및 의사결정 지연

국내 기업 환경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배주주는 기업의 성과 창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소수주주)에 대한 총실의무를 부과한다면 경영에서 중요 문제인 M&A 및 구조조정 등의 결정에 있어 의사결정 지연 및 지배주주들이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 ② 소송 남발 우려

소수 주주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나 배임 소송을 남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처럼 지배주주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회사의 이익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는

18) Flanagan, R. Shareholder Primacy: The Misconstruction, Oxford Law Blogs, 2023.

19) 최준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총실의무’ 논란 小考, 한국기업법학회, 2024, p.20-21.

20) Jens Dammann,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GENERAL DUTY OF CARE: A DOGMA THAT SHOULD BE ABANDONED,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2015, 2, p.479-p506, 28p.

21) 이상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총실의무-총실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하는 법안에 대한 검토-, 상사법연구 제41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22, p.399-450.

결국 소수 주주를 포함한 회사 전체의 손해가 될 것이다.

최준선 교수는 주주평등원칙과 기존 상법상 보호장치로도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보며, 오히려 충실의무 확대는 소송 남발과 경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그는 충실의무를 확대하기보다는 경영판단원칙의 명문화 등으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시한다.<sup>22)</sup>

### 3. 경제적 부작용

#### ①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우려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주주들이 과도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나 인수합병을 주저하게 되고 결국 기업 가치를 훼손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다.<sup>23)</sup>

또한 과도한 규제는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때문에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감소시켜 해외의 투자자본의 감소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심화가 우려된다.

#### ② 투기 자본의 공격 가능성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도입함으로써 이들의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둔다면, 외국 투기자본이나 행동주의 펀드가 지분 쪼개기를 통해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건물 주인의 권한 제한을 통해 세입자나 외부인이 건물 운영에 더 많이 개입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예를 들 수 있다. 지배주주에 대한 모든 결정에 충실의무를 근거로 문제를 삼게 되면 이를 반박하는 데에만 많은 자원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및 해외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흔들릴 위험을 증가시킨다.<sup>24)</sup>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이나 기업의 자사주 매입 등은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데, 한국의 기업 특성상 최대 주주로서 대표이사나 이사회 의장을 맡은 비율이 40% 이상이다. 때문에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는 위와 같은 결의를 하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 있고, 해외 자본이 노리는 국내 기업이 적절한 방어권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sup>25)</sup>

대한상익은 중소기업이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경영권 공격에 노출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sup>26)</sup>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부과 시 이사회 이사의 선출 과정에서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행동주의 펀드가 제도를 악용하게 된다면 상장회사의 이사회가 외국계 투기 자본에 장악될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2018년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을 공격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법률 허점을 이용한 공격이 빈번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sup>27)</sup>

22) 최준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논란 小考, 한국기업법학회, 2024, p.20-21.

23) PRESS9,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될 것""(2024.07.15), <https://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59709> (최종방문일: 2025. 06. 28).

24) 시장경제, "천재민 "野 상법개정안, 투기자본에 경영권 뺏길 우려" [시경EPA]"(2025. 02. 27),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783> (최종방문일: 2025. 06. 29)

25)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783>

26) 연합뉴스, "상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면밀히 재검토해야"(2024. 11. 28),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8088200003?input=1195m> (최종방문일: 2025. 06. 28)

27) 한경 코리아마켓, "상법개정, 경영권 위협 커...자본시장법 바꿔 주주 보호할 것"(2024. 11. 24)

#### 4. 기존 제도 정비와 운용 개선

강영기 교수는 이사 및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상법에 명문화하려는 최근 논의에 대해 법리적 타당성과 실무적 효과를 중심으로 비판한다. 그는 충실의무는 본래 회사에 대한 것이지 개별 주주나 지배주주에게 확장될 성질이 아니며, 이를 명문화할 경우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 경영 판단 위축, 소송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본의 사례를 들어, 충실의무를 입법화하지 않고도 공시의무 강화, 이사회 구조 개선, 이해충돌 방지 제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주주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역시 충실의무 명문화보다는 기존 제도의 정비와 운용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sup>28)</sup>

### V.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도입하자는 견해 비판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상법에 명문화하자는 견해는, 기업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배주주는 단순한 투자자의 지위를 넘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으며, 그로 인해 소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는 점에서, 이사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정 부분 타당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법리적·제도적 정합성뿐 아니라 실무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여러 한계를 안고 있으며, 그 도입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충실의무는 원래 이사와 회사 간의 위임관계에 기초한 개념이다. 이사는 회사 업무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고도의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배주주는 법적으로 대리인이 아니라 소유자다. 그 권한은 지분율에 근거하고 있으며, 책임 구조 또한 다르다. 이러한 두 주체를 동일한 법적 잣대로 묶는 것은 개념적 확장에 무리가 따르고, 상법의 체계적 정합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둘째,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법에 명시하더라도,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지배주주는 이사와 달리 공식적 결재권이나 서명 행위 없이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행위의 외형은 간접적이고 비공식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구조에서는 충실의무를 도입하더라도 책임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회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즉, 제도는 존재하되 실효성은 없는 '형해화'된 규범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셋째, 지배주주에게 충실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이사와의 책임 경계가 모호해져 오히려 이사의 충실의무가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사회가 책임을 지배주주의 의사 개입으로 돌리려 하거나, 지배주주의 존재를 방패 삼아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기업 내 책임 구조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의사결정 주체 간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넷째, 현행 상법 체계 내에서도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나 이해충돌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사회 승인 요건, 공시의무, 소수 주주 권리 보호제도, 감사위원회 제도 등은 충실의무와 유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는 입법보다 운영과 집행의 문제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의무라는 추상적 규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411251> (최종방문일: 2025. 06. 29)

28) 강영기,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및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명문화에 관한 소고, 한국기업법학회, 2024, p.119-121.

을 새로 도입한다면, 법적 중복과 해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이러한 입법 시도는 막대한 정책 자원을 요구하는데,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새로운 의무를 도입하면 기준 설정, 입법 해석, 행정 집행, 사법 적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충실의무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실질적 효과는 미미한 반면, 공시제도 개선이나 시장 감시 기능 강화 등 보다 실효적인 분야에 투입될 수 있는 정책 역량이 분산된다. 이는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결국, 지배주주에게 충실의무를 부과하는 주장은 현실의 문제의식은 담고 있으나,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방식은 법적 실효성과 구조적 타당성 모두에서 회의적이다. 법은 선언이 아니라 작동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하며,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시되는 상법 영역에서 새로운 규범의 도입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지배주주 문제는 충실의무 명문화보다 기존 제도의 정비, 공시 투명성 강화, 감시 기능의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지금은 새로운 법적 책임을 선언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수단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 VI. 도입 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

### 1. 소액주주 소송 보호 활성화 방안

현재 한국 상법은 주주가 자신의 손해를 직접 배상 청구할 수 있는 단독소송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대신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제기하는 대표소송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불법 행위로 인해 소수 주주가 개인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주주의 단독소송 허용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수 주주가 회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사나 지배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소수 주주는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표소송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지배주주 충실의무를 별도로 입법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가능해진다.

또한 소액주주들의 구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표 소송, 집단소송 규제를 완화하여 집단소송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한 사후 구제가 더 용이하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소송 남발과 경영 위축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손해 규모 이상의 소송만 허용하거나, 소송 비용 부담 규정 강화, 증명책임 완화 및 정보 접근권 보장 등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대표소송과 단독소송 간 중복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화와 소송 대상 행위 범위의 명확화도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주주 단독소송 허용은 적절한 규제와 보완 장치를 전제로 소수 주주의 권리를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2. 자본시장법상 강화

기존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강화한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규제를 명문화, 대규모 거래나 특수관계인 거래 시 공시의무는 있지만 실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승인요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공시 위반을 했을 때에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다. 상장폐지나 거래 정지에 대한 투자자 보호기금을 설치하거나 거래정지 후에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회사의 개선 방안 등을

공시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열도록 한다.

### 3. 소수 주주 권익보호 보험제도의 도입

지배주주 충실의무를 신설하지 않으면서도 소수 주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수 주주 권익보호 보험제도의 도입을 제시한다.

소수 주주 권익보호 보험제도는 소수 주주가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위법·부당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를 통해 소수 주주는 신속한 손해보전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경영정보나 내부거래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험사가 독립적인 감시자로 작동함으로써, 공적 규제나 지배주주 충실의무를 대신해 실질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진다.

특히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소수 주주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나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면, 제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가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하여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보장범위는 경영진의 배임·횡령, 부당한 내부거래, 부당한 물적분할 등으로 발생한 주주가치의 하락을 포함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 법원이 권익침해라고 인정한 사안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수 주주는 손해 발생 시 빠르게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보험사는 손해율을 관리하기 위해 기업의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외부 감시력이 강화되고 소수 주주의 권익이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된다. 또한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은 주주친화적·ESG 경영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어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 기준과 심사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한다. 또한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가입요건을 엄격히 하고, 허위 청구 방지를 위한 감사체계도 병행해야 한다.

### 4. 독립이사 제도 도입 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란, 민사소송에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소송과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요청 및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이다. 이 제도는 실제적 진실 발견과 쟁점의 명확화, 소송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당사자 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사소송법상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문서제출명령)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349조, 제350조에 의거해 상대방의 해당 문서의 기재에 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상대방이 해당 문서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요증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즉, 법원의 재량판단하기에 주장이 진실인지 의심이 되거나, 존재하는지 애매하다고 생각된다면 진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소수 주주에게는 문서 외의 자료로 주장의 타당성을 높여야 하고, 이들에게 증명의 책임이 가중된다. 지배주주와 소수 주주 간의 소송에서는 정보 접근성이 핵심이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의 제도를 개정한다면 소수 주주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에서 상호 간의 증거 및 정보 공개의 의무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소송을 정해둔다. 일정 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 또는 기업과 개인 간의 소송처럼 양측의 정보 비대칭이 큰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이외의 재판은 신속성 등을 보장한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신청한 정보 내용을 종합하여, 법원이 각자 공개해야 할 정보를 전달한다. 관련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변론 기일 전까지 정보 공개 및 열람, 복사 등을 끝내도록 규정해둔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제출을 거부한다면, 주장하는 측의 주장을 사실로 추정한다. 정보 공개 청구 제도의 남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각 측의 신청 횟수를 정해두며, 허위 신청 시 이후의 신청을 금지하는 등의 제한 규정을 마련해둔다.

또한 기업의 기밀사항 보호를 위하여 법원은 기업 측에 정보를 전달할 때, 기업의 감사에게 전달한다. 감사 측은 정보 선별 후, 기밀 사항 등으로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출거부서에 사유를 작성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독립이사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해당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지배주주에 대한 소수 주주의 권리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Ⅶ. 결론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상법에 명문화하자는 주장에는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과 소수 주주 보호라는 타당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그러나 충실의무는 본래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은 이사와 같은 대리인에게 부과되는 법적 개념으로, 그 적용 대상과 범위에는 분명한 법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지배주주는 회사의 업무를 직접 집행하거나 대리하지 않으며, 단지 지분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뿐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충실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념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나 불공정한 영향력 행사를 제어하기 위한 접근은, 충실의무의 개념 확장보다는 공시제도 강화, 이해충돌 거래의 절차적 통제, 소수 주주 권한 보장,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등 또한 앞서 말한 소액주주 소송 보호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법상 강화, 소수 주주 권익보호 보험제도의 도입 강화, 독립이사 제도 도입 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같은 실효성있는 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실의무 도입이라는 선언적 입법보다, 현재의 법제도 내에서 작동가능한 현실적 수단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길이다.

## Ⅷ. 참고문헌

### 1. 학술 논문

윤민섭,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도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6p  
Rafael La Porta, Florencia Lopez-de-Silanes, Andrei Shleifer, Robert Vishny, 2000, Investor Protec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박창규,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 시 소수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 -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36(1), 2023.

강영기,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및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명문화에 관한 소고, 2024.

송호신,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에 대한 비교연혁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2010.

문정해,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도입 가능성에 대한 소고 - 미국 델라웨어주법상 이사와 지배주주의 신인의무 비교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32(1), 2025.

이성복,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현황과 특징",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4-20, 2024.

송인방, 지배주주의 행위기준, 한국법학회, 2006.

김재범, 주주 충실의무론의 수용 이사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사)한국사법학회, 2015.

박기령, "E.S.G 법제 정책연구(III)-E.S.G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제: 주주와 주주총회-", 한국법제연구원, 2023

Ernest Lim,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Fiduciary Duties in 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오재영,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성과 및 기업가치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증권학회, 2005.

Flanagan, R. Shareholder Primacy: The Misconstruction, Oxford Law Blogs, 2023.

최준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논란 小考, 한국기업법학회, 2024.

Jens Dammann,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GENERAL DUTY OF CARE: A DOGMA THAT SHOULD BE ABANDONED,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2015.

이상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충실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하는 법안에 대한 검토-, 상사법연구 제41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22.

최준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논란 小考, 한국기업법학회, 2024.

강영기,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및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명문화에 관한 소고, 한국기업법학회, 2024.

## 2. 인터넷 기사

KB캐피탈, "상법개정, 기업과 주주의 새로운 관계", KB캐피탈 홈페이지,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4권 22호",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2024.

창업일보, "상법을 통한 '한국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지배구조개선제도' 토론회 개최"(2024. 10. 04),

동아일보, "기업 지배구조와 주가 상관관계 불분명"(2024. 10 .02),

한경 코리아마켓, "상법개정, 경영권 위협 커...자본시장법 바뀌 주주 보호할 것"(2024. 11. 24)

PRESS9,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될 것""(2024.07.15),

시장경제, "천재민 "野 상법개정안, 투기자본에 경영권 뺏길 우려" [시경EPA]"(2025. 02. 27),

연합뉴스, "상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면밀히 재검토해야"(2024. 11. 28).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8088200003?input=1195m>

<https://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59709>.

<https://kbcapital.co.kr/aboutus/cmpgdnf/finLifeDtl.kbc?blbdSeqno=107663>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001/130138393/2>

<https://kbcapital.co.kr/aboutus/cmpgdnc/finLifeDtl.kbc?blbdSeqno=107663>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771>

<https://www.news33.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467>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78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411251>

#### \* 보고서 작성 히스토리

2025. 06. 30 1차 회의 및 자료 조사

2025. 07. 03 2차 회의 및 피드백

2025. 07. 05 보고서 작성 및 검토, 수정

2025. 07. 07 보고서 최종 마무리

#### \* 소감 및 평가

##### 202132987 주진우 (A+)

이번 과제는 이번 정부의 상법개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라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도 또한 소액 주주로서 회사의 횡령 문제 등으로 인해 거래정지, 상장폐지까지 어떻게 되는지 가까이서 지켜봤기에 더욱 소액주주의 보호수단에 대해 더욱 생각하게 되었고 회사 이익이라는 명분이 때로는 지배주주의 사익에만 집중되며,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는 정보도 부족하고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손해만 떠안는다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를 보며 법과 제도가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찾아본 논문들에 해외의 좋은 제도들 등 새로운 방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팀플레이를 하면서 팀원들의 각자 생각에 대해 들어보고 현실적으로는 허점이 많겠지만 창의적인 의견, 견해 등을 듣고 의견을 나누며 유용하고 개성적인 방안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 들으며 서로 배우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 등을 지적하고 서로 책의 조문등을 찾아보며 무엇이 잘못됐기에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을 토의하며 자기 스스로 배우고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공부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 202332317 김주영 (A+)

과제를 수행하면서 회사법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처음 접했지만, 혼자 공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다. 팀원들과 서로 다른 관점과 해석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내 입장도 자연스럽게 재검토하게 되었고, 각 입장이 도출되는 이유를 보다 면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팀플에서 느낀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시각을 접하면서 사고의 폭이 넓어진 점이다.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근거를 찾고 논리를 맞춰가는 과정을 반복하며, 법률 문제를 단순 암기가 아니라 현실과 연계된 복합적 사안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 과정 덕분에 회사법이 단순한 이론을 넘어 실제 기업 경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번 팀플 경험을 통해 수업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벗어나, 직접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토론하는 학습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이러한 협력적 학습 방식을 자주 활용하여 법학 공부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한층 더 높여가고자 한다.

#### 202332279 이정미 (A+)

이번 팀플은 교수님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논문을 읽고 지배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제였다. 처음에는 주제가 흥미롭게 느껴졌지만 실제로 논문을 읽고 비판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특히 충실의무, 법적 수탁관계, 주주 간 관계의 법적 성격 등 생소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논문에서 주장하는 논점은 매우 논리적이고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맞다', '틀리다'로 접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비판이라는 이름 아래 단순히 반대의견을 내기보다는 찬성론과 반대론을 모두 찾아보고 지배주주 충실의무 도입에 관한 대안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과정은 무척 힘들었지만 덕분에 학문적 비판이란 단지 공격이 아니라 논리 위에 논리를 쌓아가는 과정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논문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법률 조항 하나 추가한다고 실질적인 보호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흔히 법이 바뀌면 현실도 바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질적인 제도 설계와 집행 역량이 뒤따르지 않으면 법은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과제를 통해 깨달았다. 이번 활동은 난이도도 높았고 팀원들과의 논의도 많았다. 하지만 과제를 마치고 나니 단지 법조문이나 제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 점이 개인적으로 큰 배움이였다. 앞으로 다른 법학 공부를 하거나 정책을 이해할 때도 '이 제도가 실제로 잘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을 잊지 않고 적용해보고 싶다.

#### 202432422 허정현 (A+)

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도입 여부에 대해 팀원들과 함께 토의하고, 각 입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단순한 주장 나열을 넘어 다양한 학술 및 통계 자료들을 토대로 법률 규범의 적용 가능성, 기업 경영의 현실, 제도의 실효성을 논리적으로 조율해 나가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였다. 특히 제안 제시의 부분에 있어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팀원들이 짚어주었고, 덕분에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조율할 수 있었다. 특히 법률 제도란 단순히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팀원들 간의 의견 충돌은 피할 수 없었지만, 의견 간의 설득과 조율, 타협의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책 제안의 방식과 비슷하다고 느꼈고, 이런 점이 정책연구원을 목표로 하는 나에게 또 다른 성장 발판이 되어준 시간이였다.